

『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0년 9월 27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0년 9월 27일

라. 상정일자 : 2010년 10월 6일

제15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

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선산출장소장 이 춘 배

나. 제안이유

- 「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·보완 하려는 것임

다. 주요내용

- 도매시장법인 지정 신청서류 변경(안 제8조제1항)
- 중도매업 허가 신청서류 변경(안 제25조제1항)
- 정가 또는 수의매매 확대를 위한 품목 추가(안 제43조제1항)
- 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추가(안 제70조제3항 중 제5호 및 제6호)
- 출하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기준 미달품 출하자에 대하여 출하 제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(안 제71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3항)

라. 참고사항

- 「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
- 업무규정 표준안[농림부 유통정책과-3374호(2007.7.31)]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김 교 역

- 「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
- 도매시장법인 지정에 따른 법인등기부등본은 전자정부법에 의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으로 담당공무원이 확인토록 하고, 중도매업 허가 신청 시 임원의 이력서 제출을 삭제하여 민원인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였고,
-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거래품목을 67개에서 76개로 9개 품목을 확대 지정하여 농산물 거래를 활성화토록 하였으며,

-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2개 항목 신설하였음.
- 그리고 출하농산물의 안전성검사 기준 미달품 출하자에 대하여 출하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위하여 개정코자 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